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,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내용으로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시·군·구 및 시·도의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변경(안 제3조의2, 안 제4조의2)

시·군·구 및 시·도의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현행 제3조(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), 제4조(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)를 준용함

나. 국가와 인구감소관심지역 협약 체결 통보(안 제6조)

인구감소관심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함

다.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(안 제7조)

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음

라.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생활인구 산정(안 제15조)

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자체 장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주민만족도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실태,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현황, 생활인구 등으로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시·군·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)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”은 “시·군·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”으로, “인구감소지역”은 “인구감소관심지역”으로, “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”는 “시·군·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”로 본다.

제4조의2(시·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)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”은 “시·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”으로, “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”는 “시·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”로 본다.

제6조 중 “인구감소지역”을 “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(이하 “인구감소지역등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인구감소지역에”를 “인구감소지역등에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인구감소지역”을 “인구감소지역등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인구감소지역”을 각각 “인구감소지역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인구감소지역”을 “인구감소지역등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조의2(시·군·구 인구감소관 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의 수립·변경)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구감 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 에는 제3조제1항부터 제8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”은 “시·군·구 인구 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”으 로, “인구감소지역”은 “인구감 소관심지역”으로, “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”는 “시·군·구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위원회”로 본다.
<u><신 설></u>	제4조의2(시·도 인구감소관심지 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) 인구감소관심지역 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구감소 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에

	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”은 “시·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”으로, “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”는 “시·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”로 본다.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) 지방자치단체(<u>인구감소지역</u>을 관할하는 시·도 또는 <u>인구감소지역</u>에 속하는 시·군·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.	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) -----<u>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</u>(이하 “<u>인구감소지역등</u>”이라 한다)--- <u>인구감소지역등</u>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7조(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)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<u>인구감소지역</u>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군·구기본계획 및 시·군·구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「지방교부세법」 제9조	제7조(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) -- ----- -- <u>인구감소지역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제15조(실태조사의 범위 등)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제15조(실태조사의 범위 등) ① - ----- ----- -----.
1. <u>인구감소지역</u> 에 대한 주민만족도	1. <u>인구감소지역등</u> ----- --
2. <u>인구감소지역</u> 에 대한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실태	2. <u>인구감소지역등</u> ----- ----- -----
3. <u>인구감소지역</u> 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	3. <u>인구감소지역등</u> ----- -----
4. <u>인구감소지역</u> 의 생활인구	4. <u>인구감소지역등</u> -----
5. 그 밖에 <u>인구감소지역</u>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(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5. ----- <u>인구감소지역등의</u>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531